

급경사지 정밀조사 위탁 사유서

□ 개요

- 급경사지법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같은법 제12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에 따라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매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수립이 필요함.
- 중기계획 수립시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에 따라 '급경사지의 기본 현황, 붕괴 및 피해 발생 현황, 보수·보강 방안, 정비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 등'의 자료를 구비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에 따르면 대책공법 및 예산 산출의 근거 마련을 위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위탁근거 및 필요성

○ 법적 근거

- 급경사지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위탁 근거 등(* 붙임 1 참조)

「급경사지법」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실태조사
- 3.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4. 제13조의2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에 관한 도서(圖書)등의 작성·보급
- 5. 제20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같은법 시행령 제3조(재해위험도평가 등)

-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급경사지의 높이, 경사도, 붕괴이력 등 붕괴위험성**
- 2. 주변 환경, 공공시설 등과의 거리 등 사회적 영향**

-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될 범위**
- 3.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

- ① ...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붕괴위험지역의 위치 및 현황**
- 3. 재해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제8호사목에 따른 위탁계약(수의계약)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급경사지 정밀조사의 신뢰성 및 전문성 필요

-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에 따르면 대책공법 및 예산 산출의 근거 마련을 위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전문가의 현장조사와 사면안정성 해석 결과를 고려하여 예상 피해 정도, 시공성, 경제성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대책공법 선정이 필요함(※ 붙임 2 참조)

※ 정밀조사 없이 정비사업 완료 → 붕괴 발생(원인 : 항구적인 대책공법을 수립하지 않음)



<정비사업 후 급경사지 붕괴 발생 사례>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는 「급경사지법」제3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설립 허가 받은 국내 유일의 급경사지 전문기관임(※ 붙임 3, 4 참조)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는 '21~'24년 급경사지 정밀조사 관련 업무를 다수 수행(※ 붙임 5 참조)

○ 사업 추진의 신속성 필요

- 급경사지 정밀조사는 급경사지 특성상 붕괴가 발생하기 전에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 및 대비하는 것으로 위탁계약(수의계약)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 필요

□ 위탁 대상

- 기관명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22, 디펠리체 1002호
- 사업자등록번호 : 505-82-12007



행정안전부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급경사지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시행일 '24.8.14.),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일 '24.7.31.)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급경사지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급경사지 실태조사 시행 근거 신설 (법 제5조의2, 영 제2조의3)

-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파악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행안부 및 시·도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새로 확인된 급경사지는 시·군·구 및 관리기관이 관리
-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급경사지의 위치·규모, 비탈면유형, 붕괴위험요인 등을 조사
- 실태조사의 방법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간접조사, 원격탐사 병행 가능

나. 상시계측관리 대상 확대 (법 제8조)

- 급경사지 붕괴징후 감지를 통한 재해예방을 위해 모든 급경사지에 상시계측관리 가능
 - (중전) 붕괴위험지역 → (개정) 전체 급경사지
- 상시계측관리 업무는 관리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에 등록된 계측업자가 대행
 -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에 계측업자로 등록된 업체만 상시계측관리 업무 수행 가능

다. 급경사지 관리대상 확대 (영 제2조)

- 급경사지 붕괴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 등 건축물과 최단거리가 3미터 이내인 인공비탈면의 경우 높이 기준을 3미터 이상으로 함
 - (중전) 5미터 이상 → (개정) 5미터 이상(주택 등 건축물과 최단거리가 3미터 이내인 경우 3미터 이상)

라. 행안부, 지자체, 관리기관의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의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위탁 근거 신설 (법 제33조, 영 제15조의6 신설)

- (위탁가능업무) 안전점검, 실태조사, 재해위험도 평가, 붕괴위험지역 정비 기준 관련 도서 작성·보급, 급경사지를 조성한 공사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마. 시·군·구의 긴급안전조치 이행명령 내용 공개 (법 제17조)

- 급경사지 주변에 안전조치명령*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지자체 공보, 홈페이지 등에 내용 게재
 -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조치

바. 상시계측관리 업무담당자의 계속전문인력 실무교육 이수 (법 제30조)

- 관리기관 상시계측관리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재해예방을 위해 계속 전문인력 실무교육 이수 의무화
- 부칙 제2조에 따라 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25.2.14.)에 개정규정에 따라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함

사.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고시 의무화 (규칙 제2조)

-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고시해야 할 항목에 지형도면 추가
 - (중전)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 → **(개정) 관보에 고시**
- 부칙 제2조에 따라 기 고시한 붕괴위험지역의 경우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 ('24.10.31.)에 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함

붙임 급경사지 관련 개정 법령 각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산지방재과장), 부산광역시(자연재난과장), 대구광역시(자연재난과장), 대전광역시(자연재난과장), 인천광역시(자연재난과장), 광주광역시(자연재난과장), 울산광역시(자연재난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자연재난과장), 경기도지사(북부안전특별점검단), 강원특별자치도지사(자연재난과장), 충청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 충청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자연재난과장), 전라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 경상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 경상북도지사(재난관리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연재난과장), 남부지방산림청장, 동부지방산림청장, 북부지방산림청장, 서부지방산림청장, 중부지방산림청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서울교통공사사장, 부산교통공사사장, 대구교통공사사장, 대전교통공사사장, 인천교통공사사장, 광주교통공사사장, 경기교통공사사장, 세종도시기동공사사장

주무관 **이성건** 시설사무관 **정순한** 재난점검과 과장 **박정호** 과 전결 2024. 8. 9.

협조자 주무관 **박선희** 주무관 **유동균**

시행 **재난점검과-3535** 접수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5-5157 팩스번호 044-205-8935 / kk100y2k@mail.go.kr / 비공개(5)

2023년도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 대책공법 및 예산 산출의 근거 마련을 위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급경사지 정밀조사는 해당 급경사지 관리현황, 일반현황(위치, 규모 등), 위험성(지반특성, 지형특성, 위험요인, 재해위험도 평가 등), 피해도(사면안정해석, 낙석시물레이션, 토석류 시물레이션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해당 급경사지의 항구적인 안정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공법과 사업비를 제시
 - ※ 급경사지 정밀조사는 중기계획 또는 실시계획(실시설계) 수립 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급경사지 법에 따른 전문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 활용 가능
 - ※ 세부 내용은 급경사지 관리 실무편람 참조
- 공법 선정은 지반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지 우선 검토하고, 교통 상황, 장비 진입 여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공성 확보가 가능하여야 하며,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
 - 주거지가 인접할 경우 천공, 발파 등으로 인한 진동소음에 따른 인접지역 위험요소 및 민원발생 해소 방안 검토
 - 급경사지 안정해석 결과 허용안전율 미만은 보강공법, 허용안전율 이상은 보호공법 등을 고려하되, 현장상황에 맞도록 공법 결정
 - 보강계획 수립은 안정해석 결과에 근거하여 붕괴위험성을 평가하여 보강공법, 보호공법, 유지관리계획 수립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검토하며 붕괴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정비가 불필요한 부분까지 획일적인 계획은 지양
- 급경사지의 예상 붕괴 형태, 규모 등을 예측하여 보강 공법을 선정하여 추가 붕괴 위험이 없도록 검토
- 암반비탈면, 토사비탈면, 혼합비탈면에 따라 붕괴 양상이 다르므로 비탈면 형태에 맞는 보강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책공법 선정
- 옹벽, 석축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설치하고 지형, 시공조건, 주변 구조물의 영향 및 높이 등을 고려하여 형식 선정
- 돌(블록)쌓기는 경사가 1:0.5보다 급하지 않고 배면의 지반이 풍화암층 이상으로 배면 토압에 대한 영향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

제 2020-15 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명칭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2.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53, 504호
3. 대표자
 - 성 명 : 류지협
 - 생년월일 : 1967년 4월 17일
 - 주 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360, 339동 1502호
4. 사업 내용
 - 급경사지 재해 예방과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급경사지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급
 - 급경사지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 급경사지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과 기술의 개발
 - 민간 주도의 급경사지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의 유치
 - 급경사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 급경사지 분야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 그 밖에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허가조건 : <별지> 참고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2020년 7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업무 활용 안내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급경사지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를 설립하였습니다.
- 3. 이와 관련하여,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주요 업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조사·계측 및 점검 등 급경사지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명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나. 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2

※ 협조사항 : 지자체 및 소속기관에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주요 업무 전파 조치

- 붙임 1.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업무 활용 요청(공문) 1부.
- 2.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업무 안내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장), 서울특별시(산지방재과장), 부산광역시(재난대응과장), 인천광역시(자연재난과장), 광주광역시(자연재난과장), 대구광역시(자연재난과장), 울산광역시(재난관리과장), 대전광역시(재난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재난관리과장), 경기도지사(북부재난안전과장), 강원도지사(재난복구과장), 충청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 충청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 전라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 전라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 경상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 경상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재난대응과장), 북부지방산림청장(산림재해안전과장), 동부지방산림청장(산림재해안전과장), 남부지방산림청장(산림재해안전과장), 중부지방산림청장(산림재해안전과장), 서부지방산림청장(산림재해안전과장), 한국도지주역공사 사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인천교통공사 사장,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부산교통공사사장, 서울교통공사사장,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주무관 **이동희** 기술서기관 **대결 200. 12. 2 차상화** 과장 전경

협조사

시행 재난경감과-4807 접수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533호 재난경감과(1나성동) / http://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5-5157 팩스번호 044-205-8931 / flyaway777@korea.kr / 대한민국 공개

붙임 5

급경사지 정밀조사 사업 실적

□ 급경사지 정밀조사(59건 이상)

[2024.08.20. 기준]

연번	과업명
1	종로구 사면안정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종로구 평창동 사면안정성검토 정밀조사
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밀점검 용역
4	경주국립공원 불국사탐방로 낙석위험지역 정밀조사
5	계룡산국립공원 급경사지(학바위일원)정밀조사
6	진위면 견산리 산7-4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7	국유재산 내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8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9	마량지구 급경사지 정밀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0	성원빌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밀점검
11	화성시 양노리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12	거창읍 죽전마을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13	문경정수장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1지구)
14	문경정수장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2지구)
15	세천체육공원 미지정 급경사지 안전정밀조사 용역
16	군도3호(세대) 급경사지 붕괴지역 조사 용역
17	2023년 안동시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18	추정1지구 긴급 정밀조사 용역 정밀조사
19	황정N1지구 긴급 정밀조사 용역 정밀조사
20	보은 내북면 두평지구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21	단양군 급경사지 정밀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2	2023년 김포시 사우2지구 급경사지 정밀조사
23	망양지구 등 3개소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밀조사
24	급경사지(울량7지구)정밀조사 용역
25	2023년 논산지구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26	영동양수 군도7호선 안정성검토 및 현황도 작성
27	지방도918호봉화현동도로측구정비공사의외8개소
28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29	삼풍2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정밀조사
30	빛고을복지관 급경사지 정밀점검
31	상주시 미지정 급경사지(내서면 노류지구) 정밀조사
32	제천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정밀조사
33	상주시 미지정 급경사지(화남면 중놀이구) 정밀조사
34	취약 장애인복지시설(한미음의 집) 급경사지 정밀조사
35	비파산 재해 위험목 제거를 위한 지반안정성 검토 용역
36	화죽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밀조사
37	매천N1지구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38	울릉군 도동항 여객선터미널 암반사면 정밀조사
39	영동 상도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밀조사
40	행촌지구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정밀조사
41	관호(N1)지구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42	고산지구 외 1개소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43	당진정미천의N1지구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44	명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밀조사 용역
45	백현지구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46	울릉군 현포지구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47	연암N3지구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48	유하지구급경사지정밀조사용역
49	2024년 보은군 급경사지 정밀조사용역
50	2024년 안동시 급경사지 정밀조사용역
51	2024년 영천시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52	한계N2지구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53	금관N3지구 외 1개소 급경사지 정밀조사
54	괴산고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55	월오N2지구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56	충청북도국제교육원 본원 급경사지 정밀조사
57	신명N2지구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58	단양군 급경사지 기본계획 수립 및 정밀조사
59	2024년 진천군 급경사지 정밀조사용역